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3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2011년부터 태봉안행사와 참외축제를 통합하여 생명문화축제를 개최함에 따른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과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의 겸직금지 규정 등과 관련한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를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로 변경(안 제1조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(겸직 등 금지) 의원 겸직 금지규정에 따라 "군의회 의원" 삭제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(겸직 등 금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입법예고(2011.2.16~2011.3.7) 결과 : 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성주참외축제(이하 “축제”라 한다)”를 “축제”로, “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친환경농정과장”을 “농정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”을 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	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개최하는 성주참외축제(이하 “축제”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참외축제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축제-----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의 ----------.
제3조(구성) ①·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, 기획감사실장, 친환경농정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축제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③ ----------농정과장--------.
1. 군의회 의원	<삭 제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추진위원의 임기) 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 및 군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.	제6조(추진위원의 임기) ①----------.----공무원-----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